

#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/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1996. 1.

제출자 제천시장

## ○ 제안이유

현재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위탁관리자가 위탁관리를 기피하고 있고, 타군에 비해 30% 정도 낮은 수준에 있어 이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청소관리, 공공시설물관리등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관리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 ○ 주요골자

-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9조제2항 별표1의 수수료의 요율표
  - . 대인 : 500원 → 700원
  - . 소인 : 300원 → 500원
- 수수료 적용기일은 1일에 한함
- 제10조제1호증 "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"을 "위탁관리자가 납부하는"으로 개정
-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증 시장의 권한을 일부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

- 근거법령 :
-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1항, 제4항
  -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
  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
  - 제천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제2호

- ※ 볼 임
1. 조례안 1부
  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  3. 관계법령사본 1부

##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증개정조례안

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중 "시장이 지정한다"를 "읍·면·동장의 신청에 의거 시장이 지정한다"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중 "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"는 "읍·면·동장의 신청에 의거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5조 제1항·제2항·제4항·제5항, 제6조 제1항 제4호·제2항·제3항·제4항·제5항, 제7조, 제8조, 제9조 제1항, 제10조 제2호, 제12조 증 "시장"을 "읍·면·동장"으로 한다.

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수수료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. 다만, 위탁관리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수수료는 "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"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한다.

제10조 제1호 증 "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"을 "위탁관리자가 납부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는"으로 한다.

"별표1"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

초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1)

## 수수료의 요율표(제9조제2항관련)

(단위 : 원)

대인	소인
<u>700</u>	<u>500</u>

※ 위 수수료는 1일에 한하여 적용한다.

○ 비고 :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대인 : 13세 이상인자

2. 소인 : 6세이상 13세 미만의 자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정)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시장이 지정한다.</u></p>	<p>제3조(지정) ①----- ----- --- <u>읍·면·동장의 신청에 의거 시장이 지정한다.</u></p>
<p>제4조(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) ① 시장은 군사상·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) ①----- ----- ----- <u>읍·면·동장의 신청에 의거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(관리)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<u>시장이</u> 관리 한다.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<u>시장이</u>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. ③ (생략)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<u>시장이</u>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⑤ <u>시장은</u>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관리) ①----- <u>읍·면·동장이</u> ----- ②----- <u>읍·면·동장이</u>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 <u>읍·면·동장이</u> ----- ----- ⑤ <u>읍·면·동장은</u> -----</p>

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행위의 허가 및 제한) ①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<u>시장의</u>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1 ~ 3 (생략) 4. 기타 <u>시장이</u>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만, <u>시장이</u>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③ <u>시장은</u>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지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.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<u>시장에게</u> 제출하여야 한다. ⑤ <u>시장은</u>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	제6조(행위의 허가 및 제한) ① ----- ----- <u>읍,면,동장의</u> ----- ----- ----- 1 ~ 3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읍,면,동장이</u> ----- ② ----- ----- <u>읍,면,동장이</u> ----- ----- ③ <u>읍,면,동장은</u> ----- ----- ----- ④ ----- ----- <u>읍,면,동장에게</u> ----- ----- ⑤ <u>읍,면,동장은</u> ----- ----- -----
제7조(허가취소) <u>시장은</u>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를 취	제7조(허가취소) <u>읍,면,동장은</u> ----- ----- -----

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.</p> <p>1 ~ 6 (생 락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 ~ 6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권리양도의 제한)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<u>시장의</u> 사전승인 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제8조(권리양도의 제한) -----</p> <p>----- <u>읍.면.동장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9조(수수료) ① <u>시장은</u>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수수료는 <u>이용객 및 청소외무자(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, 소유자를 말한다)로부터</u>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. 다만, 위탁관리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수수료는 "제천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"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한다.</p> <p>5의 일시적 다량폐기물에 준한다.</p>	<p>제9조(수수료) ① <u>읍.면.동장은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수수료는 <u>이용객으로부터</u>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. 다만, 위탁관리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수수료는 "제천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"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한다.</p>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수수료의 징수) (생 락)</p> <p>1.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. 다만, <u>청소외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"제천시일반폐기물 기출관리조례"</u>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 한다.</p> <p>2. 수수료는 <u>시장이</u>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수수료의 징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다만, <u>위탁관리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수수료는 "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-- <u>읍·면·동장이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2조(입장거절 및 퇴장) <u>시장은</u>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1 ~ 5 (생 락)</p>	<p>제12조(입장거절 및 퇴장) <u>읍·면·동장은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1 ~ 5 (현행과 같음)</p>

# 신·구·조·문·대·비·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
<p>(별표1)</p> <p>수수료의 요율표(제9조 제2항 관련)</p> <p>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대 인</th><th>소 인</th></tr> <tr> <td><u>500</u></td><td><u>300</u></td></tr> </table> <p>○ 비고 :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 인 : 13세이상인 자</li> <li>2. 소 인 : 6세이상 13세미만의 자</li> </ol>	대 인	소 인	<u>500</u>	<u>300</u>	<p>(별표1)</p> <p>수수료의 요율표(제9조 제2항 관련)</p> <p>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대 인</th><th>소 인</th></tr> <tr> <td><u>700</u></td><td><u>500</u></td></tr> </table> <p>※ 위 수수료는 1일에 한하여 적용한다.</p> <p>○ 비고 :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 인 : 13세이상인 자</li> <li>2. 소 인 : 6세이상 13세미만의 자</li> </ol>	대 인	소 인	<u>700</u>	<u>500</u>
대 인	소 인								
<u>500</u>	<u>300</u>								
대 인	소 인								
<u>700</u>	<u>500</u>								